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1판 개정 안내

1. 관련: 중앙방역대책본부-24981(2022.8.16.)

2. ?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? 제13-1판을 송부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개정 사항>	
<p>① (사례정의)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기간 연장 및 PCR 검사 우선순위 중 시행 대상 현행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속항원검사 인정기간 : '22.3.14 ~ '22.5.13 → '22.3.14 ~ 별도 안내시 까지 - PCR 검사 우선순위 현행화 : 외국인보호시설, 교정시설, 입영 장정, 감염취약시설 등 	
<p>② (해외입국자 관리방안) 입국 후 대응절차, 무증상·경증 확진자 병상배정 원칙(공항) 등 현행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, 10일간 수동 감시,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 권고 - 임시생활시설, 생활치료센터 등 운영 중단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 적용(단기 체류 외국인전용 생활치료센터 1개소 운영 유지) 	
<p>③ (확진환자 대응방안) 초기분류 및 병상배정 기준, 재검출 사례 인정 기준(신속항원검사) 및 감염취약시설(3종) 상세화</p>	
<p>④ (실험실 검사 관리)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칭 일원화,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사항 추가(인권위 권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기존)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→ (개정) <u>호흡기환자진료센터</u> - 검체 채취·취급·검사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관별 역할 및 절차·방법 추가 	
<p>⑤ (기타)역학조사 사전 고지문,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변경, 외국인 격리입원치료 비자부담 절차 등 현행화</p>	

※ 시행일: 2022.8.15.

- 붙임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1판 1부.
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.
 3. (서식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판 1부. 끝.

교 육 부 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 손승의 보건사무관 김태환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전결 2022.8.17.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6343 ((2022.8.17.)) 접수 ()
우 2815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/ www.moe.go.kr
전화 0442036960 전송 0442036438 / inzero85@korea.co.kr / 비공개